

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이지	1 / 6

- 목 차 -

0. 개정 이력
1. 총 칙
2. 기본원칙
3. 지속 가능한 목표
4. 부칙



 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 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 이 지	2 / 6

0. 개정 이력

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 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 이 지	3 / 6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목 적]

이 정책은 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사업 활동 간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 대한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 범위]

이 정책은 회사의 지배력이 행사되는 모든 조직경계에 적용한다. 또한 회사의 사업활동 간 협력관계에 있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준수될 것을 권장한다.

단, 해외에 있는 회사의 별도 법인의 경우 현지법 및 현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별도의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 3 조 [기본 방침]

이 정책은 환경관련법규, 회사의 환경영영방침 및 회사의 환경 영향 현행을 근거로 한다.

제 4 조 [환경경영방침]

티에스모스트(주)는 제품의 설계, 생산 및 서비스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예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,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합니다.

자동차용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티에스모스트(주)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환경을 경영전략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제품의 설계, 생산 및 서비스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통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.

- ① 환경법규와 환경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② 부품의 개발, 구매,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린 체재를 구축하여 친환경 제품생산을 지향한다.
- ③ 자원절약 및 재활용, 에너지 절약하여 효율적 사용 체계화 한다.
- ④ 환경성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활동, 제품, 서비스 등에 관련된 주요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개선관리를 실행한다.



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 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이지	4 / 6

제 2 장 기본원칙

제 5 조 [용수]

회사의 공급되는 용수는 ‘생활용수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공업용수는 해당이 없다.

- ① 월간 발생하는 용수 사용량을 측정한다.
- ② 사업장 내 지하수 용수 저장이 가능한 저수조를 운영한다.
- ③ 상수도 수질검사, 지하수 수질검사 등 생활용수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한다.
- ④ 사내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용수 절약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.

제 6 조 [폐기물]

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‘일반폐기물’과 ‘지정폐기물’이며, 건설폐기물은 없다.

- ①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보관한다.
- ② 폐기물 배출의 법적 주기를 준수한다.
- ③ 폐기물은 고형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한다.
- ④ 성상이 나빠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‘소각’ 처리하며, 연1회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여 법적 책임을 다한다.
- ⑤ 폐기물 배출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근거를 유지한다.
- ⑥ 사무실 내 쓰레기 줄이기, 일회용품 사용 절제 등 사내 캠페인을 실시한다.

제 7 조 [온실가스/에너지]

회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‘전기’, ‘법인차량 이동연소(휘발유, 경유)’다.

-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 문서를 보관한다.
- ② 회사는 월간, 연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및 보관한다.
- ③ 회사는 월간, 연간 사업장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.
- ④ 에어컨 적정온도 유지, 점심시간 소등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.

제 8 조 [원부자재]

회사는 제품 및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구매 시, 최적화된 사업전략과 계획 및 예산편성 안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원부자재의 무분별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한다.



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이지	5 / 6

제 9 조 [폐제품]

회사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생산 및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안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에 대하여 재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폐제품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하는 등 폐제품이 매립 또는 소각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.

제 10 조 [유해위험물질]

회사는 공정 안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MSDS 문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다한다.

- ① MSDS 문서 내 명시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준수한다.
- ② 근로자 작업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취급 전용 보호구를 지급한다.
- ③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토양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시켜 배출한다.

제 11 조 [소음·진동]

회사의 사업장 중 ‘프레스’, ‘단조’ 공정 등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다한다.

- ① 소음과 진동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하며,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② 작업환경측정을 법적 주기에 맞게 실시한다.
- ③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를 획득하고 사업활동을 전개한다.

제 12 조 [환경관련 법·규제 위반]

- ① 회사는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.
- ② 회사는 관할 지역 관공서의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점검에 투명하게 대응한다.
- ③ 회사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또는 이의제기에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답변 및 대응한다.



티에스모스트 주식회사	규 정	표준번호	TS-MS-004
		개정번호	1
	환경정책	제정일자	2024. 11. 01
		폐 이 지	6 / 6

제 3 장 지속 가능한 목표

제 13 조 [사업장 내 LED 전환]

회사는 2025년까지 사업장 내 형광등 등 전력 효율이 좋지 않은 등기구를 사용하는 전 구역을 LED 등으로 전환한다.

제 14조 [Scope3 배출원 시스템 구축]

회사는 2030년까지 Scope3(협력사 등)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.

제 15조 [Scope2 재생에너지 전환]

회사는 2030년까지 Scope2(전기) 에너지 사용량의 10%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.

부 칙

이 정책은 2024년 11월 1일 부로 제정한다.

이 정책은 2024년 11월 1일 부로 시행한다.

회사는 본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부 법령 및 ISO14001 표준에 준하여
에너지 사용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제정하여 시행한다.

